



* 이 감사결과는 감사당시 관계 법령, 조례, 규칙 등에 의하여 수감된 내용으로 감사이후 관계 법령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- 2016년 여성가족과 자체 종합감사 -

감사 결과 처분 내용



당진시
(감사법무담당관)

□ 여성가족과 감사결과 처분 내용

① ○○○○○○○○ ◇◇◇ 방수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부적정

- ○○○○○○○○ ◇◇◇ 방수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설계도서에 의하면 수밀코킹 및 콘크리트치핑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, 준공서류의 공사사진을 확인한 결과 해당부분을 미시공 하였음. 따라서, 설계된 부분의 미시공 사항을 확인하였을 경우 정산조치를 취하여야 하나, 설계서대로 완료한 것으로 인정 준공처리 하였으며, 그 결과 제경비 포함 *,***천원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등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 한 사실이 있음.

◀ 처 분 요 구 ▶

과다 지급한 사업비 *,***천원을 회수 조치하고, 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

② 물품 구입에 따른 정수승인 절차 부적정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수관리대상물품 중 정수가 배정되지 않은 물품은 취득할 수 없으며, 그 구입 및 유지·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할 수 없음. 그러나, 여성가족과에서 냉난방기를 구입(교체)하면서 정수관리대상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정수물품 승인을 받은 후 예산편성 및 구입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, 구입한 날 회계과에 정수물품 승인요청을 하여 그 다음 날짜로 승인통보를 받는 등 정수승인 절차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음.

◀ 처 분 요 구 ▶

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

③ 민원 처리 규정 미준수

-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은 민원실(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)에서 접수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그 민원문서의 왼쪽 윗부분에 별표 3의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고 접수번호, 접수일시, 처리기한, 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를 기입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럼에도 여성가족과에서는 감사대상기간 동안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신고서 접수 시 민원실에서 접수하지 않고 민원문서 표시인을 찍지 않은 채 문서등록을 하였으며,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고 민원을 처리하는 등 민원 처리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이 있음.

◀ 처 분 요 구 ▶

관련 규정을 연찬하여 민원처리 절차를 준수하여 민원을 접수·처리 하시기 바람

④ 관외출장 복귀자 식비 중복 지급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」에 의하면 급식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 중에서 교대근무자, 야간근무수당·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, 어떤 경우라도 중복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됨.

그럼에도 여성가족과에서는 관외출장 후 복귀자에게 급식을 제공하여 특근 매식비 **,***원을 관외출장 여비와 중복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음.

◀ 처 분 요 구 ▶

중복지급한 식비 **,***원을 회수 조치하고,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

⑤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 미준수

- 「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(행정자치부 예규)」에 의하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후 매출표 서명란에 사용자의 소속,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고,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하며,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대장을 작성·비치하고,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내역을 분임재무관(실·과장)까지 보고(결재) 하여야 함에도,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 사용 요령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음.

◀ 처 분 요 구 ▶

관련 규정을 철저히 연찬하여 앞으로는 법인카드 사용 준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